CHUBB®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2019년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여 개정 정보통신망법 미준수에 따른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는 새로운 보험 상품입니다.

주요가입대상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해당됨

* 당사 인수불가업종 : 포탈 / 항공운송업 / 유가증권 및 현금 등가물의 거래소(가상화폐 포함) / SNS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기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1의2)

* 매출액 및 이용자 수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차등 적용

이용자 수	매출액	800억원 초과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미만
100만명 이상		10억원	5억원	2억원	면제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5억원	2억원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2억원	1억원	5천만원	
1천명 미만		면제			

• 매출액 산정 방법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은 법인(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기준
-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으로 산정 (단,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

• 이용자 수 산정 방법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의 일일평균
→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 수의 총합 / 92(일) (단, 직전년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산정(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것도 가능)
- 방문자 수가 아닌,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온·오프라인 이용자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에이스손해보험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기본담보**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를 총칭합니다.

- **확장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위기관리컨설팅비용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초기에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고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 가치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컨설팅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시 해당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래 비용
  - 변호사 상담비용
  - 위기(사고)의 원인 조사비용
  - 전화회선의 증설, 통화료 또는 콜센터 위탁비용
  -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 위로금·위문품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해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단,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보장」 특약 가입 시 보장)
-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

처브그룹 소개

처브그룹은 세계 최대의 상장 손해보험사이자 미국 최대 기업보험 전문 보험사입니다.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액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1,74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미화 380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30,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4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60
www.chubb.com/kr

박주연 부장
Head of Financial Lines & Environmental Risk
Property & Casualty Division
O +82 2 6711 5733
E jamie.park@chubb.com

박윤미 대리
Financial Lines Underwriter
Property & Casualty Division
O +82 2 6711 5757
E yoonmi.park@chubb.com

Chubb. Insured.℠

© 2020 처브그룹. Chubb®, 처브 로고 그리고 Chubb. Insured.℠ 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CHUBB®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하실 수 없습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취소 신청주소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위치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고객서비스센터) 에이스아메리칸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전화 : 02-2127-2400)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 면책사항 (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해약환급금) 안내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 1566-5800(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 www.chubb.com/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www.fss.or.kr/국번없이 1332) /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ubb. Insured.℠

© 2020 처브그룹. Chubb®, 처브 로고 그리고 Chubb. Insured.℠ 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에이스손해보험 P&C-2020-0011 (2020.01.29)